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느린학습자
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6 일

여 수 시 장

2023.12.6



여수시 조례 제2000호

붙임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1부

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여가·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느린학습자”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.
- 2.“느린학습자 평생교육”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 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느린학습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「여수시 평생학습 조례」 제

3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수립 시 포함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
3. 교육 프로그램 현황·개발·보급 및 지원
4.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·운영
5.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
6.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 운영 등)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지원대상자 선정,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
2.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지원
3.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
4.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
5.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
6.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
7.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위탁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범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지도·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 등)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